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12월 9일

나. 제 출 자 :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 2020년 12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12월 15일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박 수 원

나. 제안이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선포 및 대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민과 소상공인의 소비둔화 및 경기위축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인상 시기를 유예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개별계량 방식 수수료,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가격 인상 시기 유예
(안 별표 1, 부칙)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합 의 :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강 창 조

- 본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시민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안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인상 시기를 유예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20.4월)때 해당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 단위 수수료를 킬로그램당 60원에서 70원으로 10원 상향 조정하고 부피 단위 수수료를 리터당 50원으로 조정한 바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수입 대비 비용처리 과다 지출로 인한 적자해소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주민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가격인상 시기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